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111(본소), 2022가합349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용역비]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이상훈, 정경아, 이명규, 송영규, 목지운, 정주영, 조재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우천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찬욱

변론 종결2023. 4. 6.

판결 선고2023. 6.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0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임대·전대·매매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대가의 지급

1) 원고는 2018.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수용재결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가로 합계 1,6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수용재결업무지원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정보 수령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1. 손실보상협의, 토지 등의 수용재결업무

2.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 경위서 작성 업무
 3. 보상평가의뢰, 건물실측 및 지장물조사 실무 지원 업무
 4. 수용할 토지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분석 업무
(설정, 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 권리관계 분석)
 5. 용역업무에 필요한 유관기관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후처리 지원업무
 6.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및 서명날인 요청서 작성 및 보상협의 업무
 7. 보상계획열람공고 업무
 8. 최종 주소지 확인 업무
 9. 공시송달공고 업무
 10. 재결신청서 작성 및 신청 업무
 11.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시 소유자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업무
 12. 소유자 행정소송 제기시 소송실무 지원 업무(건당 추가비용 발생)
 13.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서울시 정비사업조례 제42조의5 관련)
사업시행인가 후부터 관리처분계획총회까지
 14. 그 밖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제4조(용역대가)

1. 용역 계약금액: 금 일십오억이천만원정(₩1,520,000,000) - 부가세 별도
2. 지급방법

계약금	업무시작 1개월 전	30%	456,000,000	VAT 별도
1차 중도금	손실보상 감정평가 완료시	30%	456,000,000	
2차 중도금	지토위 수용재결 신청시	30%	456,000,000	
잔금	지토위 수용재결정본 수령시	10%	152,000,000	
계		100%	1,520,000,000	

제7조(원고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피고가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 ② 피고가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 ③ 계약당사자의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 ④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피고에게 14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한다.

제10조(용역업무 중단 시 보수지급)

- 1.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 2. 원고와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이미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 3.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 4.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 환불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501,600,000원(= 계약금 456,000,000원 + 부가가치세 45,600,000원)을, 2019. 7. 16. 위 용역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으로 501,600,000원(= 1차 중도금 456,000,000원 + 부가가치세 45,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통보

1) 원고는 2021.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예산·회계규정 제25조 등을 위반하였고, 용역대가 및 그 지급시기 등이 과다하여 용역의 완료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위 용역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할 예정임을 통지한다. 피고가 계약 해제 내지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고의 2021. 11. 17.자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이의 및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의 시 상세한

용역비 산출 근거 및 업무수행계획서[용역비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기 수행업무 내역 및 업무수행률(기성률)을 반드시 포함]를 2021. 11. 2.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의 및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의 이의 및 소명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의원회에서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22.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대해 제41차 대의원회의(2021. 12. 1.)에서 의결을 받았고,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 2022년도 정기총회(2022. 2. 12.)에서 추인 의결을 받았다. 이에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없거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1,003,2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 상당액인 501,600,000원(이 사건 용역계약의 전체 용역대가 1,672,000,000원의 3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50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용역계약이 해제를 통보하는바, 이로써 위 용역계약은 해제되었다.

3) 원고가 2021. 10. 18.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2021. 11. 2.까지 기 수행업무 내역 및 업무수행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021. 11. 17.자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에 대한 이의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용역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이의 및 소명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용역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라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 및 해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조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용재결업무를 대리 내지 대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E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2022. 11. 29. E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한 점, ③ 원고가 2023. 4. 7. 참고자료로 제출한 형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68, 253(병합), 728(병합) 판결, 위 법원 2020. 7. 24. 선고 2020노148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1297 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수용재결 등 용역을 수임하기로 하고,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신청서 작성, 낙찰, 수용재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수용재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위 용역계약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른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예산·회계규정 제24, 25조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용역의 완료를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역대가가 과도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2021. 10. 18.자 및 2022. 3. 10.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해제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 및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해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 및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행거절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거절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이행거절 등에 따라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 범위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업무에 한정되고, 피고는 전체 용역업무 중 약 88.8%의 업무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용역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잔여 용역대금으로 468,160,000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전체 용역대금 1,672,000,000원 × 피고의 업무수행률 88% 1) - 피고가 기지급받은 용역대금 1,00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 측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효된 1차 재결의 재신청업무 및 재결 실효에 따라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신청한 손실보상 재결에 대한 대응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가 추가로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합계 196,777,770원(= 실효된 1차 재결의 재신청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185,777,770원²⁾ + 손실보상 재결 관련 대응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잔여 용역대금 및 추가 용역대금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차 중도금 4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용재결 신청시에, 잔금 1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용재결정본 수령시에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용역계약 제10조 제1항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업무는 원고가 2021. 10. 18.자 및 2022. 3. 10.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적법한 근거가 없는 해제사유를 주장하면서 위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위 용역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2. 나. 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용역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 범위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업무에 한정됨을 전제로 피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업무의 수행률을 약 88%로 산정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 범위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업무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보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관한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위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수행률은 약 30%에 불과하다고 다툼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2, 3,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업무의 범위에 영업손실보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관한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현금청산자들의 명단, 현금청산자들 중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청구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 3항에 의하면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업무를 1, 2차로 먼저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업무를 3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던 점, ③ 2018. 2. 6.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원고가 2021. 10. 18.자 및 2022. 3. 10.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위 용역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를 통보하기 이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재결업무 외의 업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업무 외의 업무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 범위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업무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수행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업무를 1, 2차로 먼저 진행하였고, 나머지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업무를 3차로 나누어 진행한 점, ② 피고가 2019. 1. 25. 현금청산자 45명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한 후 수용개시일을 2019. 9. 20.로 한 2019. 7. 26.자 수용재결(을 제3호증의 1)을 받은 점, ③ 피고가 2019. 6. 26. 현금청산자 25명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한 후 수용개시일을 2020. 8. 14.로 한 2020. 6. 26.자 수용재결(을 제3호증의 2)을 받은 점, ④ 피고가 나머지 현금청산자 83명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열람통지,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실시 등 수용재결신청을 위한 협의 직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⑤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에 수수료를 미지급함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 위 현금청산자 83명에 대한 수용재결의 신청 및 그 재결이 완료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업무의 수행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8.28%로 봄이 타당하다[원고 스스로도 1, 2차 현금청산자에 대한 피고의 업무수행 완성도는 100%이고, 3차 현금청산자에 대한

피고의 업무수행 완성도는 60%라고 인정한 바 있다(이 사건 소장 제8면)].

1차 수용재결업무	45	29.41% (= 45명/153명 × 100)
2차 수용재결업무	25	16.33% (= 25명/153명 × 100)
3차 수용재결업무	83	32.54% (= 83명/153명 × 60)
합계	153	78.28%

다) 잔여 용역대금의 액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잔여 용역대금으로 305,641,600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전체 용역대금 1,672,000,000원 × 피고의 업무수행률 78.28% - 피고가 기지급받은 용역대금 1,00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추가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4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 2차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여 1, 2차 수용재결이 실효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실효된 1차 재결의 재신청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던 사실, 재결이 실효됨에 따라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추가 용역 수행에 대한 용역비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추가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잔여 용역대금으로

305,64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진웅

판사이유섭

판사백송이

1)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1,471,360,000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전체 용역대금 1,672,00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의 업무수행률을 88%로 보아 산정한 금액이다.

2) 피고는 반소장에서 실효된 1차 재결의 재신청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557,333,330원으로 산정하여 주장하였으나, 이후 2022. 11.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부분 용역대금을 185,777,770원으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3)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이하 버림